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4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인근 시·군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설(안 제8조 ~ 안 제13조)

- 대 상 :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유족

※ 1호(순국선열), 2호(애국지사), 3호(전몰군경), 4호(전상군경), 5호(순직군경), 6호(공상군경)

- 금 액 : 월 3만원
- 지급제외 :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
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
나. 사망위로금 지급신설(안 제14조)

- 대 상 :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중 사망자 - 금 액 : 20만원
- 지급순위 :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(배우자, 자녀, 부모 순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, 제4조제1항, 제5조,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예산부서와 합의 후 반영예정

다.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 : 2014.10.17~11.5(20일간)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,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)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월 3만원으로 한다. 이 경우「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수당의 지급제외)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
2. 「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
제10조(수당의 신청) 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(이하 “수급권자”라 한다)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·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·면장은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수당지급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)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

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. 단,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, 일요일(공휴일 포함) 경우에는 전일(前日)에 지급한다.

제12조(수당의 지급 중지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.

1.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
2. 수급권자가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
3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지원 부적격자로 확인 된 경우

제13조(환수조치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2.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제14조(사망위로금 지급 등)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(이하 “위로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고,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.

③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의 수급권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서를 접수한 읍·면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위로금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.

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)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월 3만원으로 한다. 이 경우「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제8조 (생 략)	제15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<신 설>	제9조(수당의 지급제외)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1.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. 「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제9조 (생 략)	제16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<신 설>	제10조(수당의 신청) 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(이하 “수급권자”라 한다)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・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・면장은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수당지급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생 략)	제17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
<신 설>	제11조(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)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. 단,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, 일요일(공휴일 포함) 경우에는 전일(前日)에 지급한다.
<신 설>	제12조(수당의 지급 중지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. 1.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. 수급권자가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지원 부적격자로 확인 된 경우
<신 설>	제14조(사망위로금 지급 등)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(이하 “위로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고,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. ③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의 수급권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서를 접수한 읍·면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④ 위로금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.

<신 설>	제13조(환수조치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1.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.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